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#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병윤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5일

3. 개정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
 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→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
## 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
에 따라 정보공개대상기관인 출자·출연기관을 “공공기관의 정보공개  
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”에서 “「지방  
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  
자기관 및 출연기관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올바  
른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